

사 천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

선 람	기 관 의 장

제415호 2015. 8. 27.(목)

훈 령

- 사천시 훈령 제303호 사천시 직장내 성희롱 예방지침 전부개정규정 _____ 2

공 고

- 사천시공고 제2015-756호 곤명면 추천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공고 ----- 11

고 시

- 사천시고시 제2015-121호 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변경승인사항 고시 ----- 12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사천시 / 편집 : 공보감사담당관 / ☎ 831-2215 / FAX 831-6011

사 천 시 공 보

제415(2)

훈 령

사천시 훈령 제303호

사천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 전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2015년 8월 27일

사 천 시 장 송 도 근

사천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 전부개정규정

사천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사천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사천시 소속 직원의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사천시의 소속 직원(시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)으로 한다.

제3조(성희롱의 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“성희롱”이란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.

제4조(시장의 책무) ① 시장은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.

1.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
2. 성희롱 고충전담창구의 설치·운영
3. 성희롱 고충처리절차의 마련
4. 성희롱 가해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

사 천 시 공 보

제415(3)

5. 소속직원에 대한 홍보 및 예방 교육의 참석

6. 성희롱 방지 관련 예산 확보 등

② 시장은 성희롱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하고, 이를 위하여 매년 성희롱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제5조(고충전담창구) ① 시장은 성희롱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·처리를 위하여 행정과 인사 업무담당부서에 성희롱 고충전담창구(이하 “고충전담창구”라 한다)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고충전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 고충상담원(이하 “고충상담원”이라 한다)을 지정하되, 인사 또는 복무 담당자를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하고, 남성과 여성 직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. 고충상담원의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한다.

③ 고충전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·조언 및 고충의 접수
2.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
3. 성희롱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·조정에 관한 사항
4.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
5.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·홍보 등 그 밖의 성희롱 예방 업무

④ 고충전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, 성희롱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제6조(예방교육) ① 시장은 매년 연초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·내용·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사 천 시 공 보

제415(4)

② 성희롱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, 시청각 교육,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한 차례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,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성희롱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
2.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
3.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
4.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
5. 민원인,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과 발생 시 대처방안
6. 그 밖의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등

③ 신규 임용된 직원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④ 시장은 성희롱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해서 고위직 관리자를 대상으로 별도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.

⑤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 사회복지과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, 교육 참석자 명단, 교육내용, 교육사진, 강사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7조(고충 신청) ①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, 전화,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전담창구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고충의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.

제8조(상담 및 조사)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·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,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.

사 천 시 공 보

제415(5)

②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 중이거나,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.

④ 조사 과정에서 행정과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, 해당 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.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.

⑤ 성희롱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진지하게 경청하여야 한다.

⑥ 성희롱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, 전자우편, 유선 등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.

제9조(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) ① 시장(인사·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)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사람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시장은 피해자의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분장과 업무공간을 분리하는 등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여야 한다.

③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,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, 학습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.

④ 성희롱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고충상담원 등은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사 천 시 공 보

제415(6)

제10조(조사결과에의 보고 등)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성희롱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에 따른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.

제11조(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시장은 성희롱 사안의 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.

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과장,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노조임직원 1명 및 외부전문가 2명을 시장이 위촉한다. 다만,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, 당연직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

제12조(위원회의 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이 피해자 또는 행위자 일 때는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.

④ 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위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, 해당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.

제13조(조사의 종결) 조사결과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.

사 천 시 공 보

제415(7)

제14조(징계) ① 시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성희롱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, 학습권 등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.

제15조(재발방지조치 등) ① 시장은 성희롱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·시행한다.

②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, 보직변경,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, 피해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.

③ 시장은 지침 제14조 제1항 및 제2항,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성희롱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사 천 시 공 보

제415(8)

[별지 제1호서식]

고충접수 및 처리대장								
접수 번호	접수 일자	신 청 인		고충내용	처리결과	회신 일자	확 인	
		성명	소속부서				과장	○○장

사 천 시 공 보

제415(9)

[별지 제2호서식]

성희룡 고충 신청서					
접수일자	. . .		담당자	(서명)	
당사자	신청인	성명		소속	
		직급		성별	
	대리인 <small>※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</small>	성명		소속	
		직급		성별	
	행위자	성명		소속	
		직급		성별	
상 담 (신 청) 내 용	※ 6하 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, 지속성의 여부,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.				
요구사항 <small>※ 조사를 원하는 경우</small>	1. 성희룡의 중지() 2. 공개사과() 3. 징계 등 인사조치() 4. 기타()				
처리결과					
※ 관련 자료를 첨부한다.					

사 천 시 공 보

제415(10)

[별지 제3호서식]

성희롱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

심의일자		장 소			
제 목					
개 요					
토의내용					
의결사항					
위 의결사항을 확인합니다.					
〈위원확인〉					
직 위		성 명	심의결과		서 명
위원장	부시장		가	부	
위 원					
위 원					
위 원					
위 원					
위 원					

사 천 시 공 보

제415(11)

공 고

사천시 공고 제2015-756호

곤명면 추천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공고

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곤명면 추천1지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공고합니다.

2015. 8. 27.

사 천 시 장

1. 사 업 명 : 곤명면 추천1지구 지적재조사사업
2. 시 행 자 : 사천시장
3. 사업완료 필지수 및 면적 : 35필 / 128,438.6㎡
4. 지적확정조서 : 붙임참조
5. 공람기간 : 2015. 8. 28 ~ 9. 10 (14일)
6. 공람장소 : 사천시청 토지관리과
7. 공람 비치서류 관계서류 열람
 - 가. 새로 작성한 지적공부
 - 나. 경계점표지등록부
 - 다. 측량성과 결정을 위하여 취득한 측량기록물
8. 문 의 처 : 사천시청 토지관리과 토지재조사담당(☎055-831-2841,2842)

붙임 지적확정조서 1부. 끝.

사 천 시 공 보

제415(12)

고 시

사천시 고시 제2015-121호

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변경승인사항 고시
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 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15. 8. 27.

사 천 시 장

1. 점용·사용 변경승인번호(승인일자) : 제2015-2호(2015. 7. 15.)
2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 일자 : 2015. 8. 26.
3. 점용·사용의 목적

○ 기존 선착장 협소로 인한 유도선·선박 접안, 어로활동 등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,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들의 편익제공, 어선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

4. 점용·사용의 장소

○ 경남 사천시 마도동 79-2번지선 공유수면

5. 점용·사용의 면적 : 279.5m²

6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변경사항

당 초			변 경		
규모	점용면적(m ²)		규모	점용면적(m ²)	
도선장(선착장) L=29.0m, B=5.0m	계	330.6	도선장(선착장) L=20.0m, B=5.0m	계	279.5
	직접	145		직접	100
	간접	185.6		간접	179.5

사 천 시 공 보

제415(13)

7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 받은 자의 성명·주소

○ 사천시장(건설과장) /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

8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 조건

○ 점용·사용 허가(변경)조건에 대한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, 이외 개별법에 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절차를 이행한 후, 시행하여야 합니다.

○ 실시계획승인변경신청서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, 실시계획 변경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
지적확정조서

번호	토지 소재지			종전 토지			확정된 토지					소유자		비고
	시·군·구	읍·면	동·리	지번	지목	면적 (㎡)	지번	지목	면적(㎡)	증가한 면적 (㎡)	감소한 면적 (㎡)	주소	성명	
1	사천시	곤명면	추천리	227	전	397	227	전	397.0	-	-	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945 **	문*규	
2	사천시	곤명면	추천리	228	전	747	228	전	747.0	-	-	부산시 부산진구 범전동 **	이*구	
3	사천시	곤명면	추천리	248	전	116	248	전	116.0	-	-	곤명면 추천리	하*성	
4	사천시	곤명면	추천리	249-1	전	1,540	249-1	전	489.0			사천시 사남면 조동길 49-43 **	이*명외 1인	이*명
							249-5	전	281.0			사천시 사남면 조동길 49-43 **	이*명외 1인	이*명
							249-6	전	566.4			31*	이*명외 1인	김*웅
							249-7	전	203.6			31*	이*명외 1인	김*웅
									1540.0		-			
5	사천시	곤명면	추천리	249-2	전	1,071	249-2	전	1071.0	-	-	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95번길 *	최*용	
6	사천시	곤명면	추천리	249-3	전	1,831	249-3	전	1831.0	-	-	41*	박*권	
7	사천시	곤명면	추천리	249-4	전	33	249-4	묘지	33.0	-	-	산청군 신안면 신안리 *	이*규	
8	사천시	곤명면	추천리	250	묘	466	250	묘지	466.0	-	-	산청군 신안면 신안리 *	이*규	
9	사천시	곤명면	추천리	251	전	1,230	251	전	1230.0	-	-	24*	김*생	
10	사천시	곤명면	추천리	252	전	1,825	252	전	1825.0	-	-	33*	양*석	
11	사천시	곤명면	추천리	253	전	1,092	253	전	1092.0	-	-	30*	김*도	
12	사천시	곤명면	추천리	253-1	전	650	253-1	전	650.0	-	-	425-*	이*희	
13	사천시	곤명면	추천리	254	묘지	344	254	묘지	344.0	-	-		최*택	
14	사천시	곤명면	추천리	255	전	1,048	255	전	1048.0	-	-	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***	이*희	
15	사천시	곤명면	추천리	256	전	688	256	전	688.0	-	-	대구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501*	김*호	
16	사천시	곤명면	추천리	257	전	1,590	257	전	1590.0	-	-	31*	정*현	
17	사천시	곤명면	추천리	258	전	440	258	전	440.0	-	-	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669-5*	이*환	
18	사천시	곤명면	추천리	259-1	전	850	259-1	전	850.0	-	-	사천시 곤명면 추천리 * 진주시 신안동 28-4 *	김*중 김*중	각1/2공유
19	사천시	곤명면	추천리	259-2	전	777	259-2	전	777.0	-	-	40*	김*화	
20	사천시	곤명면	추천리	산35-7	임야	40,167	226-1	임야	38547.5			경상남도 사천시 벌리한들길*	현*섭	
							226-2	임야	1619.5			경상남도 사천시 벌리한들길*	현*섭	
									40167.0		-			
21	사천시	곤명면	추천리	산35-8	임야	23,615	253-2	임야	22240.1			68*	이*사	
							253-3	임야	1374.9			68*	이*사	
									23615.0		-			
22	사천시	곤명면	추천리	산37	임야	2,975	244-1	임야	2975.0	-		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무고리 *	남평문씨****회	
23	사천시	곤명면	추천리	산38	임야	1,289	305-2	임야	1289.0	-		하동군 양보면 지례리	이*호	
24	사천시	곤명면	추천리	산39	임야	5,950	270-1	임야	5437.1			27*	정*명	
							270-2	임야	512.9			27*	정*명	
									5950.0		-			
25	사천시	곤명면	추천리	산42-1	임야	19,644	259-3	임야	16721.1			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검두길 *	진양정씨는열공파**중중	
							259-6	임야	503.2			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검두길 *	진양정씨는열공파**중중	
							259-7	임야	3520.1			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검두길 *	진양정씨는열공파**중중	
									20744.4	1100.4				
26	사천시	곤명면	추천리	산42-4	임야	613	259-4	도로	1112.6	499.6			사천시	
27	사천시	곤명면	추천리	산42-5	임야	16,338	259-5	임야	15850.6		-487.4	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검두길 *	진양정씨는열공파**중중	